성주군 장수축하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성주군수

2. 폐지이유

「기초연금법 시행령」제23조 제4항 규정에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을 지급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부담비율에서 100분의 10을 뺀 비율을 부담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군비 부담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현행 조례 폐지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기초연금법 시행령」제23조 제4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 의견없음.(2015.8.11.~8.31)

성주군 4세대 이상 효 가정 지원에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 안 자 : 성주군수

2. 폐지이유

「기초연금법 시행령」제23조 제4항 규정에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을 지급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부담비율에서 100분의 10을 뺀 비율을 부담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군비 부담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현행 조례 폐지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기초연금법 시행령」제23조 제4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 의견없음.(2015.8.11.~8.31)

□ 검토의견

- 본 폐지 조례안들은 2014. 7. 1부터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초연금법 시행령」제23조제4항 비용의 부담 규정에 의하면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을 지급 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가 부담비율에서 100분의 10을 뺀 비율을 부담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수당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경우 10%의 페널티 적용 등으로 국가 부담비율 축소에 따른 군비 부담 가중이 예상되어 폐지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기초연금의 부담비율은 국비90%, 도비2%. 군비 8%이며 올해 기초연금 예산은 217억 178만 3,000원이며 국비가 195억 3,160만 5,000원으로 10%페널티 적용 금액은 19억 5,316만원입니다.

○ 법리 검토 결과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장수수당과 효도수당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급했던 경북 도내 8개시군 중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고령군은 지급을 중단했고 인근 칠곡군 등 대다수 자치단체에서 조례 폐지 검토 중에 있으며, 기초연금의 국가 부담비율 축소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현행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주군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 안 자 : 성주군수

2. 제정이유

○ 다양한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우리 군에 맞는 위기상황 기준을 정하여 지원, 대상자의 위기상황을 해소코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 위기상황의 기준(안 제2조)

-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 한 경우
-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 2

나. 예산조치 : 148,363천원 정도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 : 의견없음.(2015. 8. 11 ~ 2015. 8. 31)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긴급복지 지원법」제 2조에 따라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가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항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군 실정에 맞는 위기상황 기준을 정하여 신속한 지원을 하고자 규정하는 조례로서

○ 주요내용으로는

- 본 제정 조례안은 총 4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 안 제2조에서는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결정되기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건강보험료 등 기타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과다채무, 신용불량자,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등 위기상황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3조에서는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리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에게 신속한 지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주군 행복지킴이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 안 자 : 성주군수

2. 제정이유

○ 지역주민들의 참여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미비점 보완과 민간사회 안전망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상시 이웃 돌봄 분위기를 조성코자 운영하는 성주군 행복지킴이들의 사기진작과 활동 활성화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성주군 행복지킴이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성주군 행복지킴이의 의무 및 비밀누설금지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성주군 행복지킴이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예산부서와 합의 후 예산반영 예정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 : 의견없음(2015. 8. 11 ~ 2015. 8. 31)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2015. 7. 1부터 시행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 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민간사회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이웃 돌봄 문화를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서

○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본 조례안은 총 1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안 제2조에서는 성주군 행복지킴이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리별 1명씩 두되 방문여건을 고려하여 자연부락간의 거리가 5㎞이상이거나 방문세대가 300세대 이상일 경우 1명을 추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3조에서는 직무수행 중 대상자에 대한 인격존중 및 차별금지, 직무수행 중 습득한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4조에서는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을
-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교육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 안 제8조에서는 성주군 행복지킴이는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 안 제9조에서는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조례안은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의 발굴 및 신고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례로서

○ 법리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므로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